

목 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2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3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3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3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3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3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4
가. 권유기간	4
나. 피권유자의 범위	4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5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5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5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5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5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6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6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6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6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7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8
☐ 이사의 해임	8
☐ 이사의 선임	8
확인서	9
☐ 정관의 변경	13
☐ 감사의 선임	18
확인서	1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12월 05일

권 유 자:	성 명: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240 전화번호: 02-489-3611
작 성 자:	성 명: 임승희 부서 및 직위: 관리부 전무이사 전화번호: 02-489-361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12월 05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12월 20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12월 10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필요한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이사의해임			
☐ 이사의선임			
☐ 정관의변경			
☐ 감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보통주	683,333	8.64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안희숙	최대주주	보통주	856,000	10.82	최대주주	-
백병하	특별관계자	보통주	720,556	9.11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	대표이사
김소령	특별관계자	보통주	160,000	2.02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	-
(주)오스코리아제약	특별관계자	보통주	50,000	0.63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	-
계	-	-	1,786,556	22.58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임승희	보통주	0	미등기임원	미등기임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제이스에스에스	법인	-	-	-	-	-
주식회사 씨지트러스트	법인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제이스에스에스	최종승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길6, 606호 (역삼동, 테헤란오피스빌딩)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02-2052-1110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	-----	-----	------	-----

주식회사 씨지트러스트	권상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74-10, 3층 302호 (자곡동, 강남에이스타워g9)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010-3907-2406 02-6211-5080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12월 05일	2024년 12월 10일	2024년 12월 19일	2024년 12월 20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4년 11월 25일 주주명부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12월 10일 9시 ~ 2024년 12월 19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PC) http://evote.ksd.or.kr (모바일)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1)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지막날은 17시까지 가능)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 상정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한국유니온제약(주)	https://ukp.co.kr	홈페이지 內, [고객]-[공지사항] 메뉴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게시글의 첨부 참조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보내실 곳

- 우편 및 현장 접수처: (134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240 삼환하이팩스 A동 417호, 한국 유니온제약 주주총회 담당자 앞
- 전화번호 : 02-489-3611

■ 위임장 접수기간 : 2024년 12월 10일 ~ 12월 19일 주주총회 개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12월 20일 오전 9시
장 소	강원도 원주시 동부순환로 200 (주)호텔인터불고 아테나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12월 10일 9시 ~ 2024년 12월 19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1) 전자투표 행사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지막날은 17시까지 가능)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 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 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관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대리 행사할 경우, 아래 준비물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해임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해임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최근 주요약력	예정임기만료일
양태현	1976.02.27	• 전 Bear Stearns, Investment Banking, Analyst, New York • 전 Oakhills Capital, Dubai, UAE • 전 Greenfire Bio LLC, Director, US • 현 한국유니온제약(주) 사내이사	2027년 03월 29일
예상규	1970.01.05	• 전 한일 연구자교류협회 회장 • 전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위원 •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주임교수	2027년 03월 29일
양준석	1971.11.20	• 전 우석대 한의과대학 한방내과 외래교수 • 현 양생채가 한의원 원장	2027년 03월 29일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해임대상자 성명	해임하여야 할 사유
양태현	주주제안
예상규	주주제안
양준석	주주제안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병직	1973.03.08.	사내이사	부	-	주주제안
임승희	1966.09.03.	사내이사	부	-	주주제안
임수근	1978.03.07.	사내이사	부	-	주주제안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조병직	(주)와이애텍 대표이사	2012. ~ 2016. 2021. ~ 2022. 2022. ~ 현재	주식회사 매크로브 대표이사 대한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주식회사 와이애텍 대표이사	-
임승희	한국유니온제약(주) 전무이사	2012. ~ 2015. 2018. ~ 2020. 2023. ~ 2024. 2020. ~ 현재	주식회사 지엔엘(舊 티엘씨레저) 관리이사 주식회사 아이톡시(舊 와이드온라인) 관리이사 리엔케이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식회사 안다미로홀딩스 대표이사	-
임수근	한국유니온제약(주) 이사	2013. ~ 2015. 2015. ~ 2017. 2016. ~ 현재 2019. ~ 현재	주식회사 서림건설 법무팀장 AKTK인베스트 기획이사 디에이치투자개발 대표이사 주식회사 현강 대표이사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

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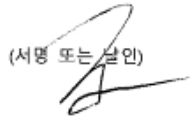
(이사선임시)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4년 12월 5일

보고자 : 조병직 (서명 또는 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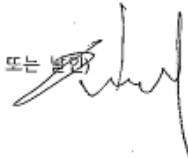
(이사선임시)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4년 12월 5일

보고자 : 임승희 (서명 또는 날인)



(이사선임시)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중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4년 12월 5일

보고자 : 임수근

(서명 또는 날인)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35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2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제 35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 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이사회 소집통지기간 변경
제 37조의 2(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기타 회사 경영상 필요한 위원회	제 37조의 2(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삭제] 2. 기타 회사 경영상 필요한 위원회	감사위원회 폐지
(신 설)	제 38조의 2(책임보험) ① 회사는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위해 책임보험에 부보하고, 회사사정으로 책임보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사의 책임보험 추가
(신 설)	제38조의 3(이사의 책임한도)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 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의 책임감경 추가

제 40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으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0조(감사의 수)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4명 이내로 한다.	감사제도 변경
--	---	----------------

제 40조의 2(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① 제40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제40조의 2(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해임을 의안은 이사의 선임·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성미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제도 변경
--	--	-----------------------

제 40조의 3(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40조의 3(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4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사제도 변경
---	--	-----------------------

(신 설)	제 40조의 4(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한다. ② 감사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는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8조의 2 및 제39조의 2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어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⑧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제도 변경
제 40조의 4(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0조의 5(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제도 변경
(신 설)	제 40조의 6(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위한 의안의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감사제도 변경

부칙 제 4조 (시행일)	부칙 제 4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유의선	1971.06.23	-	주주제안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유의선	법무법인 태청 국장	2012. ~ 2015. 2015. ~ 2017. 2017. ~ 2021. 2021. ~ 현재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청조 법무법인 정운 법무법인 태청 국장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

확인서

(감사선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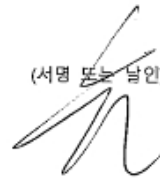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조 제3항 제5호에 의거하여 동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가목, 다목 및 라목, 바목 및 사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4년 12월 5일

보고자 : 유의선

(서명 또는 날인)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